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재진 의원 외 44명

○ 의안번호 : 제1042호

○ 발의일자 : 2023년 8월 1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2. 제 안 이 유

○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서울시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보호수를 지정할 때 고시 및 이의신청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 나.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3).
- 라.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4).
- 마.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 바. 보호수의 보호에서 행위 제한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8조).
- 사. 보호수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안 제10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보호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이하 "법") 제13조부터 제13조의61)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의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서울특별시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2)로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법이 개정³⁾되면서 '보호수의 지정·고시', '보호수의 관리이전', '행위제한', '지정해제' 등이 정비되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나 동 조례는 201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타법개정⁴⁾ 이외에는 개정된 바없으므로 상위법에서 명시한 법적 근거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행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적으로 안 제3조(보호수의 지정·고시)는 보호수의 고시와 관련하여 지정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의 법 이해와 관리청의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¹⁾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2) [}시행 2010. 3. 10.] [서울특별시조례 제4852호, 2009. 9. 29., 제정]

^{3) [}시행 2019. 7. 9] [법률 제16197호, 2019. 1. 8, 일부개정]

⁴⁾ 타법개정 연혁(2017. 1. 5., 2019., 7. 18., 2020. 12. 31.)

 안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는 보호수 관리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5)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보호수가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4조(보호수의 해제)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수를 해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호수의 지속가능한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목의 생육, 이식, 질병, 토양 등 여러 수목관리 분야 기술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조직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임.

 안 제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은 현행 조례 제8조(보호수의 보호)에 규정된 부분을 제1항의 '행위 제한'과 제2항의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제3항은 행위 허가 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보호수

⁵⁾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10조(보호수의 점검)는 현행 조례에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는 것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정기점검의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서울시는 2023년 현재 지정보호수 202주를 관리⁶⁾하고 있으며, 병해충방제 등 '보호수 생육관리'와 지지대, 안내판 등 '보호수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총 예산은 6억 4천6백만원으로 보호수 1주당 연간 약 320만원의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음.

지난해 정밀진단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육이 불량한 수목 11주가 파악된 바 있고 영양공급 등의 피해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1년 보호수 고사로 2주가 지정해제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주가 줄기 부후로해제⁷⁾되고 있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피해치료 예산의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현황(2023년)〉

-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수목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의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며, 수종별 연령, 크기 등은 산림청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함
- 현재 서울시 내 15종 202주가 지정되어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종로구가 30주로 가장 많음

(서초구 24주, 용산구 19주, 마포구 15주, 중구 13주, 은평구 12주 등)

- 상록수는 소나무, 향나무 등 3종 23주,
- 낙엽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12종 179주의 키 큰나무로 구성

^{6) 2023}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조경과-369, 2023.1.11.), 2023년 소요예산 6억 4천6백만원

⁷⁾ 졸참나무('22.12.01., 성북구), 느티나무('21.12.30., 서대문구), 회화나무('21.12.30., 송파구)